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17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22863 처분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피고, 피항소인	○○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구합17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85,866,330원 및 그중 2,044,148,620원에 대하여는 2012. 8. 6. 부터, 9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622,299,400원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17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1,099,418,310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덧붙일 판단은 아래와 같다.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는데(지방세법 제18조),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본문,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부과·징수 방식의 지방세와는 구분된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17

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받자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징규정 중 2호의 추징요건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한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외에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한 이 사건 추징규정 중 2호 사유 등에 관하여 관련 판결에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가 당연 무효로서 위 취득세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7-17

인하여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한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조세의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신고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나 판결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2. 8. 6.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납부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정○○

판사 김○○